

대구대학교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외국인교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재외국민 포함)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직급구분) 외국인교원은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4조(임용) ① 외국인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2년 이내로 계약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교원에 대하여는 다시 임용계약할 수 있다.

③ 외국인교원은 학(원)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이하 "추천기관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계약임용한다.

제5조(자격) ① 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은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예·체능계열
2. 외국어회화 분야
3. 기타 특수 분야

②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2. 조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제6조(충원) ① 외국인교원은 해당기관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기관의 장을 거쳐 총장에게 충원을 요청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외국인교원을 추천할 때 관련부서 및 관련학부(과)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이 외국인교원을 신규임용 추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교원 활용계획서
2. 이력서
3.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경력증명서
4.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해당자에 한함)
5. 여권사본
6. 증명사진
7.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④ 외국인교원을 추천할 때에는 활용계획서에 담당교과목, 학점, 추천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제7조(경력환산) ① 외국인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 계산은 다음의 경력환산표를 따른다.

1. 교육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학력을 인정받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대우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강의전담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제2류	80% ~50%	고등학교 이하의 교사 경력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의조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기업체 및 각종 학원에서 외국어 교육 강사로 근무한 경력	학원강사

2. 연구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석·박사 학위과정(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70% 비연구기관 70%
제2류	80% ~5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연구조교(연구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유급·전임조교(연구원)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제2류 이외의 조교로 근무한 경력	행정조교, 무급·전임조교(연구원), 자체조교(기관장발령)

② 경력연수는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계산한다.

③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1개 기관에서의 경력연수만을 인정한다.

(생략)